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32호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93호(1985.05.16.)로 사업완료(1지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72호(2022.07.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 면 적 : 17,274.0㎡ (대지 16,316.6㎡, 정비기반시설 957.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전영목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 12. 28.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16,316.6	9,772.01 (저층부 11,410.07)	59.89 (저층부 69.93)	213,967.66	849.33	지상19 /지하7	90.0	업무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 양 대 상 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 고
성 명	주 소	토지(㎡)	건물(㎡)	용도	
삼성생명보험(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379.92	136,117.09	업무시설	

- 2) 체비지 시설 : 토지 5,936.68㎡, 건물 77,850.57㎡
- 3) 보류지 시설 : 없음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천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	국공 유지 (㎡)	무상 양여 (㎡)
도로	중로1-201	116.0	13,499,340	서울특별시중구	-	-	-	-	-
도로	중로2-232	841.4			-	-	-	-	-
계		957.4	시행자부담		-	-	-	-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02-3396-577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납부의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제8조 (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의거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거절)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건 명 : 퇴직정산보험료(건강 및 고용보험료) 환수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 김*호
4. 공고기간 : 2022. 12. 27. ~ 2023.1. 9.(14일)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송달내용
 -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업무 근로계약(종료) 관련하여 발생한 “퇴직정산보험료(건강 및 고용보험료) 초과 지급분(본인부담금)”을 납부 고지하니,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 내 미납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3396-4856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31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현황 (정원)	개 원	비 고
신당5동 어린이집	중구 퇴계로88가길 8-10	858.22㎡ (지하1층/지상4층)	170명	82.11.8.	시간연장 영아보육

2.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가. 법인 또는 단체

-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원장 내정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 제외 대상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다.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마.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16.(월)
 나. 접수기간 : 2023. 1. 6.(금) ~ 2023. 1. 16.(월) 18:00까지
 다. 접수장소 : 중구청 본관5층 여성보육과(가족정책과)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토요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마.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비영리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합산)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자부담 승낙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첨부의 제출서류 의거작성

- 바.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서 (16부, 3~5페이지 분량)
 ※ 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23.1.20.(금) 18시까지 e-mail 제출(lym314@junggu.seoul.kr)

6. 사업설명회 : 생략

- ※ 구청방문시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

7. 위탁조건

-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 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마.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바.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가. 선정방법 :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심사일은 별도 통지)
 나. 심사항목 : 5개 분야
 - 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 「2022년 서울시 공공어린이집 위탁제(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 참고
 다. 면접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PPT발표)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라. 결과발표 :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다.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마.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제 선정을 무효로 함
 사.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함
 아.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보육과(가족정책과)(☎02-3396-5412)로 문의